

國 内 事 件

實用新案登錄無効

〈大法院 第2部 判決〉

裁 判 長 :	大法院 判事 이영문	司 理 事 長
關與判事 :	" 민운용	司 理 事 長
" :	" 김윤용	司 理 事 長
" :	" 김익선	司 理 事 長

- 事 件 : 76辛 6 實用新案登錄無効
-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정순달
-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안홍찬
代理人 辨理士 김익선
- 原審決 : 特許局 1976. 1. 29 1975 抗告審判 221號 審決
-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被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
- 理 由 : 審判請求人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第1點에서 본다.

原審이 舉示한 證據와 그 實施理由에 비추어 볼 때 심판청구인은 本件 實用新案과 同種의 亞鉛板을 販賣하였거니와 이를 판매한 者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權利分析으로 因하여 權利者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對抗을 받을 念慮가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이 舊實用新案法第24條 2項 所定의 利害關係人으로서 본건 無効審判을 청구할 수 있는 適格者라고 認定한 原審判斷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訴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判斷遊脫의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같은 上告理由 第2點을 본다. 구실용신안법제28조에 의하여 準用되는 舊特許法第113條 第3項, 第5項의 규정은 審理遲延을 避하기 위한 文示的規定에 불과하다고 解釋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1976. 1. 28 이事件審理를 終決하고 그 다음

날에 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인 1976. 2. 4에 이르러 비로서 審理終決通知書를 審決書謄本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게 送達했다고 해서 본건 심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上告理由 第3點을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惠澤證據들을 綜合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登錄出願(1969. 7. 28) 전인 1965. 11. 8에 이미 頒布公示된 그 判示引用方 式을 亞鉛板의 製作裝置와 이 사건 方式用 亞鉛板의 제작장치는 그 심금과 고무대판의 形成에 약간의 差異가 있을뿐根本的인 形成과 技術思想, 構造 및 作用效果는同一 또는 類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論旨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歸着된다하여 이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敗訴者の 부담으로 하고 關與法官의 一致된 의견으로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

國
內
外
審
判
事
例

編
輯
室

〈18〉

國外事件

〈美國〉

1. 判決

183 USPQ 172 Inre Johnston (CCPA~1974)

2. 事件要旨

本件은 會計處理를 위한 記錄保存機시스템으로서 특히 銀行과 雇客間의 회계처리시스템의 發明에 대한 特許出願事件이다.

3. 審査官의 拒絶査定理由

審査官은 본건이 디지털컴퓨터를 사용한 시스템의 발명이며 클레임 20~24가明白하게 定義되어 있지 않은 것과 公知의 시스템과도 分明한 定義上의 差異가 없는 見地에서 35 USC 112 및 103의 规定에 의해 拒絶査定하였다.

4. 審判部의 無特許性 審決

出願人은 이에 不服하여 審判請求한 바 審判部는 심사관의 拒絶理由에 대해서는 거의

言及된 바 없이 클레임은 法定範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35USC11 2) 및 USP3, 343, 133에서 自明하다는 이유(35 USC 103) 등의 거절이유에 의해 特許性이 없다고 審決하였다.

5. CCPA의 判決

審判請求人은 CCPA에 提訴한結果 CCPA는 심판부가 말하는 새 이유에 의거한 거절은 어느 것도 이유가 없다고 심결을 破棄하였다. CCPA는 그 判決에서 클레임은 機械시스템의 클레임이므로 법정범위에 드는 것이며 더우기 會計處理를 위한 記錄保持機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資料處理機,

코드化信號, 混合比較處理機, 入力出力裝置, 制御시스템, 메모리, 出力記錄製造裝置 등의 관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클레임은 特定되어 있으며 더우기 USP 3, 343, 133의 시스템과 본건시스템은 서로 다르며 클레임이 넓다하여 본건시스템의構成을 示唆하는 것은 아니라고 說示하였다.

6. 解說

본건 판결에 관하여 裁判長은 본건클레임은 公知文獻에서 차명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35USC 103의 규정에 따라 거절해야 한다는 反對意見을 陳述하고 있으며 退任한 리치判事는 본건시스템은 법정범위에 둘지 않으므로 35 USC 101의 규정에 의해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즉 심판부의 심결이 支持하지는 않았으나 強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看過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료처리기 등의 시스템에 대한 특허성이 지지되는 傾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日本〉

實用新案權侵害와 先使用權

(日本 大阪地法判決, 1977年 3月 11日, 1972年 第397號,
1975年 第453號 併合事件)

1. 原告:X

2. 被告:Y, Y₁

3. 判決主文:原告의被告에 대한 請求를 모두 棄却한다. 訴訟費用은 원고의 負擔으로 한다.

4. 提訴

X는 1968年 10月12日 出願 1952年 2月7日 登錄의 엿藁子製造裝置의 登錄實用新案權(以

下本件實用新案이라함)者이다. 同考案은 上下를開放한 엿藁子型 1과 通氣孔 2를 交互로

多數並設한 組立體 a와 受板 3과를 同一間隔 등 speed로 移行시키는 것, 또한 그 移行初의 position에서 물엿을 型 1內에 注入할 때에는 수판 3을 조립체의 下面에 붙일 것, 또 型 1內의 엿이 冷却硬化함에 따라 수판 3을 型 1에서 떨어지도록 할것을 構成要件으로 하여 물엿을 型 1內에 주입할 때에는 수판으로 型 1밑을 만들어 물엿이 型으로부터 流出함을 防止한다. 엿이 굳을 때에는 밀을 빼어 맹각화를 促進시키는 作用効

判例教室

果가 있다.

X는 Y들의 (이)號裝置가 本件實用新案을 侵害한다 하여 禁止와 損害賠償을 請求하였으나 Y들은 先使用權이 있다하여 이에 抗辯한 것이 原告, 被告들의 主張要旨이다.

5. 判決要旨

① (이)호장치는 본건 실용신안의 技術的範圍에 屬함에는當事者間에 異論이 없다.

② 선사용의 항변에 대해 Y₁ (化學精機의 製造販賣業)은 1965년 초쯤 去來先인 訴外A로부터 X에 納品하기 위해 엿連續製造販賣裝置의 關發依賴를 받았다.

그러나 Y₁의 技術部長들은 X의 會社工場을 見學한 다음 종래의 기술을 개량하여 (이)호의 基本構想을 하였고 그후 X의 立會下에 X들이 願하는 黃金色의 水分이 적은 엿을 끓일 수가 있게 되었다.

그후 Y₁은 원레터에 따라 엿을 끓이는 溫度, 時間, 빛의 變化, 充填機에 의해 成型器에

주입할 수 있는 온도의 限界, 成型器에 주입후의 冷却時間, 成型器背鐵을 墙는 시간등에 관한 資料를 X로부터入手하여 Y₁들의 指導下에 黃金糖連續製造裝置의 配置圖, 풀트시트, 成形기, 成形기 배철의 設計圖를 그해 6월에 충전기노즐 벨브本體, 플랜저등 충전기 관계의 제조설계도를 각각 完成하였다.

그리하여 Y, Y₁들의 訴外B에 대하여 飴劑成型部裝置를 포함한 黃金糖連續製造裝置乙式을 製作하여 賣渡하기로 約定했다.

한편 X는 成形기와 그 배철의 제작을 소외 C와 D에 의뢰하였고 C, D는 이를 제작하여 X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위의 장치에 缺點이 보이므로 X의 從業員 X₁과 Y₁이 協議하여 개량하기 시작한 바 1966년 3월 말쯤 이를 완성하였다.

한편 Y는 Y₁들에 의해 1967년 7월 17일, 이 장치의 見様

書를 받아 1968년 7월 20일 Y₁로부터 태제성형부장치를 포함한 엿연속제조장치 1식을 제작 매도하기로 約定하였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Y₁들은 1960년 6월 중순쯤에는 본 전고안을 포함한 장치에 대해 고안을 완성한 것으로 認知된다.

따라서 Y는 본건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계되는 고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고안을 한 Y₁들을 개입시켜 1967년 7월 중순쯤 探知하여 본건 실용신안출원때에 이미 태제성형부장치의 사용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선사용권이 있다고 할만하다.

6. 解說

이 판결에서는 成形기의 構造가 最終的으로 결정되게 된 經過를 立證하는 자료가 分明치 않으며 원래터테스트에서 契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正當화하는 자료도 볼수 없고 선사용권의 成立要件에도 疑問을 갖게 한다. Ⓜ

○ 알림 ○

과 社內體育大會를 가졌다.

第一合織 創立 5周年 記念

第一合織株式會社(代表: 李殷澤)는 7月1日 創立 5돐을 맞아 慶山工場에서 全任職員이 參석한 가운데 記念式과 社內體育大會를 가졌다.

코오롱 「코오롱20年史」發刊

株式會社 코오롱(代表: 李東燦)은 지난 7月 「코오롱 20年史」를 發刊했다. 1957年부터 77년까지 20년

을 안의 코오롱發展史를 담은 이 册子는 創業期, 開花期, 中興期, 跳躍期의 4期로 나눠 編織했다.

泰和 烏山中·高校畠 引受, 擴張

株式會社 泰和(代表: 金學命)는 京畿道 烏山所在 烏山中·高等學校를 引受했다.

내년부터는 同校를 實業高等學校로 改編하고 專門學校까지 新設할 計劃이다.

× × ×